

집단소송법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77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오기형 · 최민희 · 박홍배
김 윤 · 권철승 · 이주희
허 영 · 김영배 · 김원이
이훈기 · 노종면 · 김문수
박해철 · 이재관 · 김남근
장종태 · 박선원 · 정일영
강준현 의원(19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이 경우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런데 증권분야의 피해자들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들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권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

음.

이에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파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라.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

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책임확인소송을,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개개의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바.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책임확인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며, 책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사.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 아.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 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및 제73조).
-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3조).
-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파.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별적인 소송에서 나타나는 사법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총원”이란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대표단체”란 총원을 위하여 책임확인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제외신고”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책임확인소송”이란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개개의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제3조(관할)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6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이하 “대표당사자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

기하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단체는 책임확인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책임확인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출한다)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대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지대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② 제1항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8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대표당사자의 경력, 대표단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 소송대리인의 경력.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단체는 그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을 적지 아니한다.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제9조(소제기의 공고) ① 법원은 제6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대표당사자등의 요건 및 선임)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대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공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나. 법인의 지역적 활동범위가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다. 법인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소비자보

호, 환경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임무를 적

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라.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제5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9조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9조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전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중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사람이 불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의 요건)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주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등과 그 소송대리인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책임확인소송의 경우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6. 제8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들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 또는 책임확인소송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정 등을 명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관계법원,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대표당사

자등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 유형의 집단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이 먼저 있더라도 책임확인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확인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 유형의 집단소송절차는 책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등과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등과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제2항제1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피고는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소송비용 등)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등은 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등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개별통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복수의 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구성원 등의 소송관여) ① 구성원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조(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등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등의 사임) 대표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등의 일부변경) ① 대표당사자등의 일부가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등이 소송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잔존하는 대표당사자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이 대표당사자등의 변경 또는 추가 선임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등을 변경하거나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대표당사자등의 전부변경) ① 대표당사자등 전부가 사망(법인

의 경우에는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당사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등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등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새로 구성원이 된 사람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등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따라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당사자 등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 및 대표단체의 임원을 신문할 수 있다.

제32조(주장·답변) ① 대표당사자등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3조(석명 등) ① 상대방이 제32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등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자료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등이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관련 사건의 기록, 사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등과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그 자료의 표시 취지 및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록에 대한 당사자(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같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의 증명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상대방이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자료의 기록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의 증명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36조(검증·감정)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사람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
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
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지급방법의 특례) ① 법원은 구성원별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에게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
해배상액의 합산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그 밖에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담보
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① 집단소송의 경우 소

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책임확인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책임의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밖에 금전지급을 받을 구성원의 범위와 채권액의 계산방식을 적을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3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등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이 된 사람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심) ① 대표당사자등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를 하게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례

제45조(정의)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②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증권을 말한다.

제46조(적용범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소송허가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의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거래소에 대한 통보)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시행규칙

제4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분배절차

제50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1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분배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원은 제출된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분배 및 권리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5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5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57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8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9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사람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사람 또는 피고는 분

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2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

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63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

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사람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사람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7조 본문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4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사람은 수령기간이 지난 후 1년까지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64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금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한다.

제67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9조(추가분배)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70조(배임수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배임증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약속 또는 공여한 사람이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72조(몰수·추징)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정황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벌칙) 제34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75조(감치명령) ① 제7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7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한다.

제3조(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다.